

e 뉴스레터는...

e뉴스레터 제14호는 최근 통합체육회 정관 제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상임감사제' 관련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특집호로 제작되었습니다. 통합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의 자율성 보장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뉴스레터 말미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 뉴스레터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체육단체 통합 주요 용어사전 vol. 4) 상임감사제?



① 상임감사제의 개념

상임감사제는 기업 내에 상임으로 근무하며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과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고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감사를 두는 제도를 말한다.

② 상임감사제 도입의 목적

"통합체육회가 연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게 될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감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 문체부 보도자료(2015. 11. 12.) 中-

③ 통합체육회 정관(안) 속 상임감사제 (*제7차 통준위 안건 기준)

구분	관련조항(안)	내용
형태 및 선임 방법	제28조(임원) 제4항	제28조(임원)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감사 1인
	제3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제5항	제3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⑤ 감사는 상임으로 하되, 공모를 거쳐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	제34조(임원의 임기) 제2항	제34조(임원의 임기) 제2항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직무	제3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제6항	제3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⑥ 회장은 체육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체육회를 대표한다. 체육회와 회장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2조(임원의 직무) 제4항	제32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4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항	제4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제44조 임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된다.

감사기능과 무관하게 특정한 경우 체육회를 대표할 권한 보유

<통합체육회 정관(안) 상 감사가 체육회를 대표할 경우>

구분	내용
회장과 체육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회장과 체육회의 소송 시	상임감사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체육회를 대표

<민법 상 감사의 직무 조항>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민법 상 동일 상황 시의 대리인 관련 조항>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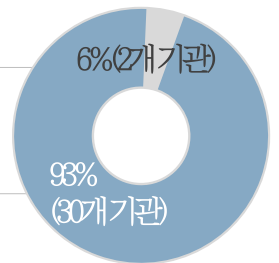
(스포츠 법률 전문가 의견 인용)

- ➔ 감사의 권한 확대는 감사 기능(직무)의 강화와는 무관하며, **국민체육진흥법·민법 상 감사의 직무대행 권한에 대한 관련 근거는 없음**
- ➔ ‘이사(회장 포함)와 체육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발생 시 민법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대리하도록 되어 있음
- ➔ 또한 정관(안) 상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을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특정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 존재

선임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귀속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상임감사 현황> (2015년 1/4분기 정기공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32개 중 상임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기관장이 상임직인 두 곳뿐이며, 그 중 장관이 선임권을 가진 경우는 오직 1곳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선임>

단체명	선임 방법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정관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1항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스포츠 법률 전문가 의견 인용)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중 상임감사제를 실시하면서 동 감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임하는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며, 해당 기관은 회장이 상근직인 경우임**
- ➔ 장관이 선임권한을 가질 경우 통합체육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관치 구조 형성 우려**

[고진현의 창(窓)과 창(窗)]상임감사에서 드러난 체육단체 통합의 불편한 진실

스포츠서울, 2015. 11. 12.(목), 고진현 기자(바로가기)



진실은 땅에 파묻은 씨앗과도 같다. 제 아무리 깊이 파묻더라도 언젠가는 싹을 틔워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더 깊이 파서 더 찜찜 묻은 씨앗은 더욱 탐스럽고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 게다. 엄혹한 환경을 뚫고 싹을 틔워야 하는 씨앗은 보통의 그것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체육계의 최대 현안인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해서도 숨어있던 '진실의 씨앗'이 움을 틔워 파장이 심상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통합체육회 정관 의결사항을 서둘러 발표했다. 많은 의결 사항 가운데 딱 두줄로 언급된 상임감사제 도입은 통합체육회의 전체적인 틀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문체부

는 자세한 설명 없이 "제 6차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이를 발표해 버렸다. 통합체육회가 연 4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임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문체부가 내세우는 논리다.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해 우려섞인 시선이 많았다. 우려의 시선은 두 가지로 요약됐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체육의 새로운 관치(官治)가 첫번째요. 자율성을 박탈한 관치가 으레 수반하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두번째 우려의 핵심 포인트였다. 문체부가 지난 2일 발표한 통합체육회 정관 의결 사항에 포함된 상임감사제의 도입은 체육계의 의심섞인 시선을 확인시켜주는 도화선이 됐다.

통합체육회 정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안된 상임감사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공기업 감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답답했다. 별로 하는 일없이 많은 월급만 타먹어 '꽃 보직'으로 불리는 공기업 감사와 달리 통합체육회 상임감사는 회장에 필적하는 역할과 파워를 지녔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 자리는 사무체내의 유일한 상근임원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대행권까지 갖는 막강한 힘을 부여했다. 경기단체 임원 중임 제한 예외규정을 결정하는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상임감사의 몫이다. 무소불위의 이러한 권력은 이사회외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감사라는 자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을 만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체육계는 "상임감사를 통한 정부의 체육회 통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더 큰 일도 터졌다. 문체부가 상임감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이다. 상임감사제 도입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문체부는 지난 9일 통준위 제 7차 회의에서 "상임감사 도입이 지난 2일 열린 제 6차 통준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밀어붙이다가 양식있는 한 명의 통준위원의 문제제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갑론을박에 이어 전자 회의록까지 꼼꼼히 뒤진 끝에 밝혀낸 사실이다. 결국 문체부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꼴이 됐다. 문체부가 진실을 왜곡하며 통과되지도 않은 통합체육회 정관의 핵심 사항을 의결됐다고 발표한 것은 결코 그 양 넘어져버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지 못하면 체육단체 통합의 방향성 훼손은 물론 향후 통합과정에서 거친 파열음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체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 어젠다에서 출발한 체육개혁은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최종 귀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 체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체육단체 통합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바로 올림픽현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체육의 자율성이다. 자율성이 훼손된 정부 주도의 체육단체 통합은 '예고된 이혼'을 배태한 '불편한 동거'일 뿐이다.

최근 정부는 조금씩 타인지 체육단체 통합에서 평정심을 잃고 있는 느낌이다. 가장 중요한 통합체육회 정관 문제에서 상임감사제 도입을 놓고 진실을 왜곡했고, 이를 때스듯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20대 총선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진실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체육회 통합에 '관치 그림자'... 곳곳 정부 입김 강화

Jtbc 뉴스룸(월~목 20:00, 금~일 19:40), 2015. 11. 12.(목), 전영희 기자(바로가기)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민간의 영역에 국가가 들어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 이런 논란이 자주 대두되는데 이번엔 체육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는 이른바 엘리트 체육을 맡고 있고,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서 정부가 이 통합체육회를 자기 수중에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IOC가 정한 규정, 즉 스포츠를 정권의 선전 수단이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통합체육회 정관안 곳곳에 문체부가 등장합니다. 문체부 간부가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장관이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임명하는 상임감사는 임원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회장에 맞먹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합니다.

[김봉석 변호사/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 : 감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통합 정관안의) 감사 선출 방식에 위법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정관안에 따르면 통합체육회는 24가지 업무에서 문체부의 직접통제를 받는데 기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체육단체 통합에 맞춰 지배력을 강화해 체육행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심동섭/문체부 체육정책관(옛 체육국장) : (체육회는) 정부랑 관계 없어요. 돈(예산)은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체육회는 공공기관이예요. 정부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당장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IOC는 스포츠가 정권 등의 선전 도구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체육단체의 정치적 독립을 올림픽 헌장에 못박았습니다. 게다가 국회는 지난 9월, 통합시점을 내년 리우 올림픽 이후로 미루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문체부는 총 30억원의 인센티브까지 걸고 개별 경기단체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OO협회 사무국장(음성변조) : 1차로 한 곳에 10억, 2차로 하면 8억, (문체부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자율성 확대와는 반대로 가는 한국 체육, 관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